

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. 4. 27 선고 2020가단11431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조합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더스

담당변호사 이재경

변론 종결 2021. 3. 16.

판결 선고 2021. 4. 27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의 경주시 D 답 1,693㎡, 경주시 E 답 698㎡에 관하여 2018. 5. 10.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.
2. 피고는 C에게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. 5. 10.접수 제25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C에게 2016. 1. 22. 127,000,000원 및 51,000,000원, 2016. 2. 26.76,000,000원, 2016. 3. 18. 127,000,000원, 2016. 3. 25. 104,000,000원, 2016. 5. 19.67,000,000원, 2016. 6. 16. 120,000,000원을 대출하여 7회에 걸쳐 합계 672,000,000원을 대출해 주었다(이하 각 대출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대출'이라 하고, 그 대출채권을 통틀어 '이 사건 각 대출채권'이라 한다).

나.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담보로 C 소유의 경주시 F빌라 G호 외 6필지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(이하 '이 사건 근저당권'이라 한다).

다. C는 남동생인 피고에게 C 소유인 경주시 D 답 1,693㎡ 및 E 답 698㎡(이하 통틀어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. 5. 10. 접수 제25685호로 2018. 5. 10.자 증여(이하 '이 사건 증여'라 한다)를 원인으로 하는 각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라.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, 2018. 6. 19.부터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기 시작하였다.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은 2018. 7.4. 현재 636,353,732원(= 대출원금 632,800,000원 + 이자 3,553,732원)에 이르렀다.

마. 원고는 2018. 9. 3. 청구금액을 641,322,902원으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, 그 다음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H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. 그에 따른 부동산임의경매절차(이하 '이 사건 경매절차'라 한다)에서 2020. 2. 19. 최우선순위 소액임차인들 7명이 1순위로 배당을 받았고, 원고는 경주시와 함께 2순위로서 채권금액 708,073,878원(= 대출원금 632,800,000원 + 이자 75,273,878원) 중 346,659,919원을 배당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17, 19, 21, 3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본안전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

가.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

원고는 2018. 9. 3.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하였다가 이 사건증여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로서 그 취소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그로부터 1년이 지나 2020. 4. 13.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.

나. 판단

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'취소원인을 안 날'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.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,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. 한편,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(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).

원고가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스스로 2018. 9. 3. 이 사건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. 그러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1순위로 배당을 받은 최우선순위의 소액임차인 7명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드러나지 않는 점, 원고가 C의 재산내역과 그 가액을 확인한 구체적 시점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원고가 2018. 9. 3. 이 사건 증여 사실의 존재를 알았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.

3.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

가. 원고의 주장 요지

이 사건 증여는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.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

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의 주장 요지

C는 피고에게 차용금채무,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, 이 사건 증여는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.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증여 당시 그 순가치가 마이 너스여서 C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.

4.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

원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이미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이 사건 각 대출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1)

나.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

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,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(대법원2007. 7. 12.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).

갑 제16, 17, 29, 30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I조합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,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C가 2017. 7.6. I조합로부터 65,000,000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,500,000원, 채무자 C, 근저당권자 I 조합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, C의 I조합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원리금합계는 2018. 5. 8. 현재 65,223,310원(= 원금 65,000,000원+ 이자 223,310원)인 사실, 위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2018. 5. 16.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로 변경된 사실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2017. 7. 4. 현재 93,249,000원으로 평가되었고, 2020. 11. 26. 현재 85,975,000원으로 평가된

사실이 인정된다.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적어도 85,975,000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, 이는 이 사건 증여 당시 C의 조합에 대한 차용금채무 원리금 및 채권최고액 84,500,000원을 상회하므로,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일부는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.

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책임재산에 속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(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이 대물변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),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C의 채권자이었고 이 사건 증여의 실질이 대물변제였더라도,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책임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다.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

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, C로서는 이 사건 증여가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, C와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.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,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반복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

라. 원상회복

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,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5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영일

1)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882,400,000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가 발생한 때와 근접한 2018. 7. 4.경의 이 사건 각 대출채권 원리금 합계를 초과하는

것으로 보이기는 하나,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할 금액이 468,165,299원(실제 배당할 금액은 456,395,179원)에 불과하였던 점을 고려하면,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대출채권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(피고도 이를 문제삼고 있지 않다).